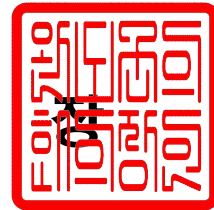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1월 20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
조례안

2. 발 의 자 : 조 영 식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,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음주운전 예방 계획 및 예방활동(안 제4조, 제5조)
- 지원 등(안 제6조)

5. 관련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1. 20. ~ 2025. 1. 25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
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「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자 (서명 또는 인)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	

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완도군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자동차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.
2. "자전거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.
3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.
4. "음주운전 사고"란 음주운전 중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하거나 물건을 손괴(損壞)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등의 책무) ①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·재산의 피해를 회

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·추진되도록 해야 한다.

⑤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,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4조(음주운전 예방계획) ① 군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(이하 "예방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
2. 음주운전의 예방 및 음주운전 위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
4. 자동차,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음주운전 예방활동)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음주운전 예방 홍보·교육 및 캠페인
2. 완도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
3.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
4.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6조(지원 등)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·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, 군민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완도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